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28

제출연월일 : 2017. 3. 8. 제 출 자 :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 및 지정변경, 그 밖에 일부 조문·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용 내용 등 신설(안 제14조~안 제20조)
- 나. 기금관리 공무원 명칭 및 지정 변경(안 제12조)
- 기금운용관, 복지경제국장 → 기금재무관, 업무담당과장
- 기금출납원,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 → 기금출납공무원, 업무담당주무관
- 다. 일부내용개정 및 조문 · 용어정비

3. 근거법규

- 가. 「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
-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및 같은 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사항 반영

라.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2017. 2. 6. ~ 2017. 2. 27.(의견없음)

마.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712호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를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 조"로, "사업을 사업"을 "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영업자"란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 제2조제3호 중 ""모범음식점" 이란"을 ""모범업소" 및 "우수업소"란"으로, "음식점을"을 "업소를"로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삽입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 한 이자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의"를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 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를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중 "영업시설개선 또는 모범음식점"을 "영업시설을 개선하거나 모범 및 우수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2.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 제8조제1항 중 "연리 2퍼센트로 하며"를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의 융자 상환이율에 따르며"로 하고, "상환기간안에"를 "상환 기간 안에" 로, "아니할때에"를 "않을 경우"로 한다.

- 제9조제1항 중 "아니할 때에"를 "않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한 안"을 "기한 안"으로, "상환기간을"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로 하다.
- 제11조제1항 중 "출납폐쇄후 80일이내"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작성하여 여야"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둔다."를 "임명한다."로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금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 2. 기금출납공무원 : 업무담당주무관
- 제12조제2항 중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 제14조 앞에 "제3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삽입한다.
-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관리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우수업소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당연직)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자로 한다.
 - 1. 업무담당과장(당연직), 구의회 의원 1명
 -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 4.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 등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 당주무관이 된다.

- ④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 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할 때
 -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지 제1호서식]

|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 | | | | | | | | |
|-------------------|-------------------------|---------|----------|------------|------|-----------|--------|-------------------|-------------------------------------|
| 대 표 | | . 자 | | | 생년 | 월 일 | | | |
| 신청인 | 업 소 명 (업 종) | | | | | 허가(신고 | 1)일자 | | |
| 1.0 T | 주 | 소 | | | | 사업자등 | 록번호 | | |
| | 영업장 : | 병업장 소재지 | | | | 전화! | 번 호 | 사업체 자 택 | |
| 사업체 | 메규모 | 영업경 | · 총면적 | | m² | 연간매 | 출액 | | 천원 |
| 영업장 4 | 소유구분 | 자 | 가, 전세, | ll, 월세, 기타 | | 월평균소 | _득액 | | 천원 |
| 자금 | 융자 | 슅 | 실소요금액(A) | | 융) | 가사신청금액(B) | | ъ | 율(B/A) |
| 신청 | 내역 | | 천원 | | | 천원 | | | |
| 신청 힙 | | 시 중 | 구 식품진 | 흥기금 은 | 유용 조 | 례」 제7조 | 또 따라 | 식품진흥 | 기금 융자를 |
| | | | | | | | 년 | 월 | 일 |
| 울산광역 | ∮시 중구 | 청장 귀 | 하 | | 신청 | 인 | (| 서명 또는 | 는 날인) |
| ※ 구비서류 | | | | | | 거i | 래하는 (|)은행 | |
|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 | | 부. | | | 확인자 | ·:직 성명 | , 불가능) (서명또는인) | |
| <담당공두 사업자 | | 사항> | | | | | 과정 중 | 는 은행의 여 | 생에서 대출심사 여신규정 등에 따 가 변경될 수 있습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위생관리시설 개선사업 계획서(제4조제1항 관련) 신·구조문대비표

| 업소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생 년 월 일 | 영업장면적 |
|-----|-------|-----|---------|-------|
| | | | | m² |

| $\overline{}$ | 7 | പ | 7 | [간 | |
|---------------|--------|-------|---|-----|--|
| () | \sim | - ~ ; | | IZT | |
| | | | | | |

- 소요자금 : 천원 (융자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개요 및 시설개선 내용
 - 시설개선 사항별 소요금액 등 구체적으로 기재
 - 0
 - 0
 - 0
 - 0
 - Ü

- 융자금 상환계획
- 기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사업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 1. "영업자"란 법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3." <u>모범음식점"이란</u> 법 제47조제 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 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u>음식점을</u> 말한다. | 3."모범업소" 및 "우수업소"란 |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2장 기금의 조성 및 운용 |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생략)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한다.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 은 회계연도마다 <u>울산광역시중구</u> <u>구정조정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u>각호의</u>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
| ③ (생 략) 제7조(기금의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 영 업시설 <u>개선 또는 모범음식점</u> 육 성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 다.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의 융자 등) ① |

| 현 행 | 개 정 안 |
|---|---------------|
|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별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3천만원이내 (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이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는 2억원이내로 하고, 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② |
| ③ 제1항에 따른 <u>융자대상자의</u> 선정은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 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 이 정한다. | ③ |
| 제8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상환이율은 연리 2퍼센트로 하며, 상환기간안에 상환하지 아니할때에는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조건 등) ①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 구청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한 기간 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 지 <u>아니할 때에</u> 는 그 이행을 촉 구하고, 채권의 확보에 필요한 | 제9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 |
|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천재 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 | 3 |
|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u>기한안</u> 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 기한 안 |
| 는 <u>그 상환기간을</u> 연장하여 줄 수 있다. | <u>6</u> 개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
|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u>출</u> <u>납폐쇄후 80일이내</u> 에 기금의 결 산보고서를 작성하여 <u>야 한다.</u> | 제11조(기금결산) ① 출납폐 쇄 후 80일 이내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 |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 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 <u><삭 제></u> |
|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관한 서류 | |
|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 |
|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 의 수입과 지출을 입증하는 서 | |
| <u>류</u> | |

혅 했 개 정 아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 <삭 제> 산보고서는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 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 관리공무원을 둔다. ------ 임명한다. 1. 기금운용관 : 복지경제국장 1. 기금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업무담 2. 기금출납공무원 : 업무담당주 당주사 무관 ② 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공무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 야 한다. <신 설> 제3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4조(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신 설>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 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 <신 설> 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 현 행 | 개 정 안 |
|------------------------|--|
| 현 행 < <u>신설></u> | 개 정 안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관리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우수업 소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 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진흥기금의 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 본법」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담당국 장(당연직)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 원 중에 호선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자로 한다. |
| <신 설> | 제17조(위원의 제착·기피·회피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아니하고 결정한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업 |
| <신 설> | 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할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을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직무를수행할수 없을 때에는그직무를 대행한다. |

| 성별 | 영향분식 | 덕평가 검 | 토의견 통 | 통보서 | |
|--------------------------|--|--|--|--------------|--|
| 관리번호 | 2017A울산중구009 | | | | |
| 정 책 명 |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 | | | |
| |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 | | 중구 | |
| 소관부서 | 부서명 | | 환경위생고 | } | |
| | 담당자명 | 한인숙 | 전화번호 | 052-290-3732 | |
|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 2017년 2월 1 | 일 | | | |
| 주요 분석평가 내용 (환경위생과) | 본 조례「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개정의 주요내용은 가.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운용 내용 등 신 설(안 제11조~안 제14조), 나. 기금관리 공무원 명칭 및 지정 변경(안 제9조), 다. 일부내용개정 및 조문·용어정비등에 대한 내용임 | | | | |
| | 본 조례 제 있어 "성별- | 16조에 해당하는 | · 당성평등기본법』 | l원회를 구성함에 | |
| | 구분 (제·7 계획 | | 개선안 (법령 수정안, 예획·사업 개선 내용) | 검토사유 | |
|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화는 위원전 포함한 내의 1 성한대 | 위원장 및 부 상 각 1인을 하여 10명 이 위원으로 구 나. | 6조(구성) ① 위원 회는 위원장 및 부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고,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7년 2월 13일 7 |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02월 06일 울산광역시 중구 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양선/052-290-3622)

환경위생과장 귀하

참고 1

관계법령 발췌

□ 식품위생법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 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3 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계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 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의 직권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 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제47조(위생등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 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9조(식품진홍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조사 연구 사업
 -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한정한 다) 상환액의 지원
 -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 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5조(영업의 허가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총리 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 1.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아니한 경우(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의2.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삭제 <2015.2.3.>

-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 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

-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울산광역시중구(이하 "중구"라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 4. "용역·공사"란 중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 게 통보하고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은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 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는 공무원 등 회의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참고 2

타 시·군·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현황

| 특별·광역시명 | 시구군명 | 구성인원 | 위원장 | 비고 |
|-------------|------|--------|------------|----|
| | 남구 | 10명 이내 | 부구청장 | |
| 0 시 키 어 기 | 동구 | 7명 | 부구청장 | |
| 울산광역시 | 북구 | 9명 이내 | 부구청장 | |
| | 울주군 | 8명 이내 | 부군수 | |
| | 수성구 | 7명 이내 | 보건소장 | |
| -II 그 리 서 기 | 남구 | 6명 이내 | 국장 | |
| 대구광역시 | 중구 | 7명 이내 | 국장 | |
| | 서구 | 7명 | 부구청장 | |
| | 강남구 | 10명 이내 | 보건소장 | |
| 서울특별시 | 구로구 | 8명 이내 | 국장 또는 보건소장 | |
| | 성북구 | 10인 이내 | 국장 | |
| 시키카서기 | 중구 | 9명 이내 | 국장 | |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7명 이내 | 부군수 | |
| 경상북도 | 경산시 | 7명 이내 | 부시장 | |
| 경상남도 | 거제시 | 5명 이내 | 국장 | |
| 강원도 | 강릉시 | 7명 이내 | 보건소장 | |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

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3 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 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의 직권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 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제47조(위생등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 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조사·연구 사업
-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한정한 다) 상환액의 지원
-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 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영업의 허가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총리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 1.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아니한 경우(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의2.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삭제 <2015.2.3.>

-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 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

-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울산광역시중구(이하 "중구"라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 4. "용역·공사"란 중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 게 통보하고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은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 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는 공무원 등 회의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참고 2 타 시·군·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현황

| 특별・광역시명 | 시구군명 | 구성인원 | 위원장 | 비고 |
|------------|------|--------|------------|----|
| | 남구 | 10명 이내 | 부구청장 | |
| O 시 되 어 기 | 동구 | 7명 | 부구청장 | |
| 울산광역시 - | 북구 | 9명 이내 | 부구청장 | |
| | 울주군 | 8명 이내 | 부군수 | |
| | 수성구 | 7명 이내 | 보건소장 | |
| 리고리어기 | 남구 | 6명 이내 | 국장 | |
| 대구광역시 | 중구 | 7명 이내 | 국장 | |
| | 서구 | 7명 | 부구청장 | |
| | 강남구 | 10명 이내 | 보건소장 | |
| 서울특별시 | 구로구 | 8명 이내 | 국장 또는 보건소장 | |
| | 성북구 | 10인 이내 | 국장 | |
| 이렇지어지 | 중구 | 9명 이내 | 국장 | |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7명 이내 | 부군수 | |
| 경상북도 | 경산시 | 7명 이내 | 부시장 | |
| 경상남도 | 거제시 | 5명 이내 | 국장 | |
| 강원도 | 강릉시 | 7명 이내 | 보건소장 | |

의 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28)

1. 의 안 명: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황 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7. 3. 8. (수)

O 제 출 자: 중구청장

O 위원회회부 : 2017. 3. 10.(금)

○ 위원회심사 : 2017. 3. 17.(금)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유형묵 복지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 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 및 지정변경, 그 밖에 일부 조문・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용 내용 등 신설(안 제14조~안 제20조)
- 기금관리 공무원 명칭 및 지정 변경(안 제12조)
 - 기금운용관, 복지경제국장 → 기금재무관, 업무담당과장
 - 기금출납원,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 → 기금출납공무원, 업무담당주무관
- 일부내용개정 및 조문·용어정비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및 같은 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5.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익희)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함으로써 기금운 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금관리 공무원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일부 불합리한 조문・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